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DOJ와 FTC, 허리케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독점금지절차 신속히 진행하기로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에 의해 피해를 받은 통신을 재구축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위한 절차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허리케인의 여파와 관련된 사업활동에 관한 조사 절차에서는 양 규제당국이 신고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업활동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일정한 사업에 대해 그것이 독점금지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법무부의 "Business Review Letter"와 연방거래위원회의 "Staff Advisory Opinion" 절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해당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90

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관례였다.

"우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피해를 받은 지역에서 복구작업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점금지국이 신속하게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그는 또한 "조인트벤처와 기타 공동의 협력행위가 허리케인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독점금지국은 이러한 복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친경쟁적인 협력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서 가격고정이나 시장 분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국가가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협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Deborah Platt

Majoras 연방거래위원장은 말했다. 그러나 또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2005. 9. 27. 연방법무부

헤지펀드 매니저, 기업결합 신고 위반으로 벌금형

커넥티컷주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기업결합 신고요건 위반을 이유로 35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형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Scott R. Sacane을 상대로 하트-스코트-로디노법(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이하 HSR)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법무부는 화해안도 제출했다.

연방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Sacane은 자신이 지배하는 투자 펀

드를 통해 두 개의 회사를 합병하면서 기업결합 신고 및 대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Sacane은 궁극적으로 Aksys Ltd.의 의결권부 주식을 50% 이상 보유할 수 있었으며, 1억 달러 상당의 Esperion Therapeutics Inc. 주식도 추가로 보유할 수 있었다.

HSR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및 대기기간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규모는 현재 5천만 달러이지만, 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최고 1만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법무부는 Sacane이 지난 2003년 2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일까지 HSR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2005. 9. 26. 연방법무부

전직 바이엘사 임원,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

두 명의 전직 바이엘사 임원이 고무 화학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가격고정담합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피소됐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연방대배심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바이엘사 고무사업 부문 이사였던 Jurgen Ick 씨와 Gunter Monn씨를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담

합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특히 대표이사였던 Monn씨는 1997년 1월에도 가격담합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독일 국적자들이다.

고무화학은 타이어나 신발 밑창 등 고무제품의 내구성, 탄성 및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매년 미국에서는 약 10억 달러의 고무화학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까지 갖가지 고무 관련 제품의 가격담합 조사의 결과로 2억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독점금지국은 18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을 통해 바이엘사와 듀폰사 등 5개 회사들과 6명의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러한 유형의 가격담합을 하여 미국 소비자들을 기망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는 상관없이 기소될 것이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국장 대행은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고무화학 산업에서의 담합에 참가한 회사와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고 Scott Hammond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장은 말했다.

이번 기소 전에도, 바이엘사와 Crompton사는 가격담합 혐의로 각각 6,600만 달러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또한 Crompton사의 임원이었던 Joseph B. Eisenberg와 James J. Conway 그리고 바이엘사의 임원이었던 Martin Petersen과 Wolfgang Koch는 모두 같은 혐의

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Koch씨는 최근에 4월의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ck와 Monn은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2003년 6월 22일 이전의 위반행위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5. 8. 10. 연방법무부

EU

EU위원회, 카르텔 참가자들에게 벌금 부과

EU위원회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및 영국의 섬유 및 실(絲) 제조업자들에 대해, EU조약 제81조의 제한적 거래관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 43.497백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산업용 실은 의복, 가정용 가구, 자동차 시트 및 안전벨트, 가죽 제품, 매트리스, 신발 및 로프 등 다양한 제품들에 봉제나 수를 놓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카르텔 행위는 불법이며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말했다. 그녀는 또한 “사업자들이 역대 시장을 분할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

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특히 지난 2001년 11월 EU위원회가 섬유 및 의류제조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했다. 이 조사기간 동안, 위원회는 사업자들이 각각 1990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베네룩스 3국과 북유럽 국가들에서, 1990년 10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영국에서 그리고 1998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EU 전체 역내에서 카르텔 협정에 참가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섬유제조업자들은 카르텔협정을 통해 회합을 갖고 가격인상에 동의하는 양자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객의 행태나 가격 목록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각국별로 매우 다양한데, Ackermann Nähgarne GmbH & Co(독일), Amann und Söhne GmbH(독일), Barbour Threads Ltd(영국), Belgian Sewing Thread N.V.(벨기에), Bieze Stork B.V.(네덜란드), Bisto Holding B.V.(네덜란드), Coats Ltd(영국), Coats UK Ltd(영국), Cousin Filterie SA(프랑스), Dollfus Mieg et Cie SA(프랑스), Donisthorpe & Company Ltd(영국), Gütermann AG(독일), Hicking Pentecost plc(영국), Oxley Threads Ltd(영국), Perivale Gütermann Ltd(영국), Zwicky & Co AG(스위스) 등이 참

가했다.

위원회는 담합행위자들의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본질상 그러한 유형의 카르텔은 경쟁을 왜곡시켜 카르텔 참가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EU위원회는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정도, 침해기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별 사업자들의 참여의 경중 등을 고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EU위원회는 Coats Ltd에게 15.05백만 유로, Amann und Söhne GmbH에게 13.09백만 유로 등 모두 43.497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담합에 참가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2005. 9. 14. EU위원회

EU위원회, 두 건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프랑스의 Electra Partners Europe SA(이하 Electra)와 룩셈부르크의 CVC Capital Partners Advisory Company(이하 CVC)가 공동으로 출판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Chevrillon Philippe Industrie group(이하 CPI)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유효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Electra는 프랑스 회사로서 펀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VC는 투자 상담 및 펀드 관리를 하고 있다. CPI는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및 영국에서 출판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조인트벤처는 CPI가 활동하고 있는 출판시장, 즉 인쇄 및 그래픽 보드 부문의 상방시장에서 CVC의 증권회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CPI는 출판시장인 하방시장에서 제한된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쇄 및 고체 보드 시장인 상방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될 위험이 배제된다. 그리고 이번 기업결합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EU위원회는 미국 회사인 UPS의 영국 계열사 UPS(UK Holding) Limited(이하 UPS UK)가 영국의 우편물 택배업체인 Lynx Express Limited(이하 Lynx)를 취득하는 것도 승인했다. 조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유효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UPS UK는 영국에서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우편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ynx도 국내 및 해외를 활동영역으로 배달 및 수송 서

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U위원회는 UPS UK와 Lynx의 활동 영역이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합 후에도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여러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EU위원회는 또한 콘글로머릿 효과(conglomerate effect)가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기존의 UPS 네트워크에 비교해 볼 때 Lynx가 UPS 네트워크에 새롭게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택배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 9. 26/27. EU위원회

EU위원회, 회원국들에 대해 전문 직역에 대한 개방 노력 촉구

그동안 몇몇 회원국들에서 전문 직역에서의 경쟁이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많은 회원국들에서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격고정이나 광고 금지와 같은 규제들은 소비자들과 EU의 경쟁상해를 끼친다. 이에 EU위원회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러한 직역에서의 근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각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EU 회원국들은 2005년 3월에 제출법하는

리스본계획(Lisbon Strategy)에 맞추어 자신들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제 이에 따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전문 직역에서의 반경쟁적 규제를 철폐하도록 국가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문 직역들은 EU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문들이며, 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보다 많은 선택 가능성, 그리고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EU위원회는 변호사, 공증인, 엔지니어, 건축가, 약사 및 회계사(세무관련 업무 종사자 포함) 등 6개 전문 직역에 대해 회원국별로 부당한 규제제도의 개혁에 관한 평가를 했다. 먼저,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영국 등 3개 회원국들은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및 슬로바키아 등 5개 회원국들은 개혁 진행상황이 저조하며, 현행 규제제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및 포르투갈 등 6개 회원국들은 개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이태리,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 등 4개 회원국들은 현재 분석 작업만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체코, 사이프러스, 핀란드, 그리스, 말타, 스페인 및 스웨덴 등 7개 회원국들에서는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 9. 5. EU위원회

EU위원회, Johnson & Johnson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미국 회사인 Johnson & Johnson(이하 J&J)이 특히 심장혈 관계 제약품으로 유명한 자신의 경쟁사인 Guidant를 기업결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약 240억 달러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회사들은 J&J나 Guidant의 내시경을 통한 혈관 이식 의료가기 부문 중 하나를 매각하고, 그 외에도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심층 조사를 통해 내려진 것이다. J&J가 제출한 신고서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EU역내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중대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우리는 소비자가 이들 두 회사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한 어떠한 변화도 소비자후생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의 승인을 요청하는 J&J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만족스럽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와 Guidant는 모두 관상 의료기기를 개발·제작 및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기기들은 인체의 심장계 및 말초신경계 치료에 사용된다. 이들은 여러 제품군들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두 회사 모두 유럽 및 세계 전역에서 관련 시장들을 주도하고 있다.

2005. 8. 25. EU위원회

EU위원회, 홍콩 TPV의 필립스 모니터 부문 합병 승인

EU위원회는 홍콩에 본사를 둔 TPV Technology Limited(이하 TPV)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의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평면 TV 스크린 부문(이하 Philips Monitors)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를 마친 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TPV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술 제공사업자이다. 이 회사는 CRT 모니터와 LCD 모니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최근에는 PDP 평면 스크린도 제작하고 있다. Philips Monitors는 필립스의 컴퓨터용 CRT 모니터와 LCD 모니터를 생산하여 OEM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TPV는 Philips Monitors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번 기업결합은 OEM 컴퓨터 모니터와 관련된 EU역내 시장에 경쟁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당사 회사들이 결합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은 경쟁사들을 앞서게 되었지만, TPV와 Philips Monitors는 결합 후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및 BenQ 등과 여전히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기업이 소비자들과 경쟁사들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Philips Monitors가 평면 TV 스크린의 OEM 생산을 하지 않은 이후로, 이 분야에서 수평적인 중복은 없으며, 이에 따라 평면 TV 스크린 시장에서는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005. 8. 8. EU위원회

EU위원회, 독일 회선공유 시장에서의 경쟁조건 개선을 요구

EU위원회 경쟁위원의 결정에 따라, 도이치텔레콤(이하 DT)은 최근 경쟁사업자와의 회선공유시 부과하는 도매요금 수준을 변경하여 네트워크 규제당국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DT는 이윤 압착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위원회에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에 DT의 공약서를 접수한 이후, 독일 통신사업자들은 회선공유를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독일 브로드밴드 시장

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매요금을 인상하려는 DT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독일의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과의 공조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선공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는 요금 구조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고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말했다.

2004년에 EU위원회는 DT의 공약서를 승인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진입자에게 DT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대가로 높은 요금을 요구함으로써 소매시장에서 DT와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윤압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지키기 위해, DT는 회선공유 요금을 4,77유로/월에서 2,43유로/월로 인하했다. 그 결과 몇몇 회사들이 회선공유를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24일 DT는 연방네트워크청에 예전의 회선공유 요금인 4,77유로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신청했다. DT가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EU위원회는 그러한 요금이 이윤압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DT에 대해 예전에 제출한 공약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DT는 최근에 다시 회선공유 요금을 2,43유로로 인하했다.

연방네트워크청도 DT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공정한 회선공유 요금체계를

수립하여 독일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EU위원회의 입장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입자선로(local loop)란 소비자의 집과 통신사업자의 지역 교환기 사이의 물리적인 선로를 말한다. 신규가입자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입자선로가 필요하여 이를 임차하는 경우에, 이를 회선공유라고 한다. 독일에서의 회선공유 요금은 통신 규제기관인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T의 경쟁사는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DT의 회선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직 독일에서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EU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 8. 3. EU위원회

유럽사법법원, 유럽 지역난방시스템 시장에 있어서 카르텔에 관한 유럽제1심법원의 판결을 지지

유럽사법법원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제재금의 설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재정(裁定)을 하였다.

유럽위원회의 법률은 사업자간의 협정, 사업자단체의 결정 및 협조적 행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서, 곧 공동시

장내 경쟁의 기능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EC조약 제81조).

유럽위원회는 스웨덴 기업 Powerpipe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심사를 행하여, 1998년에 많은 사업자가 유럽의 지역난방시스템 시장에서 일련의 금지된 협정 및 행위에 참가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는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절연파이프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덴마크 기업 4개사가 1990년 후반에 국내시장에서 일반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91 가을부터는 독일 기업 2개사가 그들의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었다. 1994년에는 그들의 교섭은 결국 유럽 전역에서 할당을 고정하는 협정이 되었다. 유럽 수준 및 국내 수준의 할당은 「DIRECTOR'S CLUB」(카르텔 참가기업의 사장 또는 영업부장들에 의해 구성됨)에 의해 각 사업자에게 할당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카르텔 참가기업에 대해 총액 9,221만 에큐(Ecu)의 제재금을 과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된 10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의 제소를 받아 들여, 유럽제1심법원은 특히 ABB Asea Brown Boveri사의 제재금을 감액하고, 기본적으로는 결정최소의 주장을 각하하였다.

그 후 7개 사업자가 유럽사법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들은 유럽제1심법원 절차규칙의 위반, 위반행위의 비난성, 제재금액의 결정, 청문 권리의 침해 및 이유를 언급할 의무의 위반 등에 관하여 많은 법적인 항변을 제기하였다.

금일의 판결에서 유럽사법법원은 이러한 의논의 전부를 각하함으로써, 유럽제1심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동 판결에서 유럽사법법원은 특히 금회의 건에서는 유럽위원회의 제재금 설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기 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승인하였다. 유럽사법법원은 이러한 적용은 법적 기대의 보호원칙 및 비소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히 가이드라인 및 이에 추가된 결들여진 새로운 제재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상고인들의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가 행해졌을 때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사법법원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제재금 산정방법의 적법성과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하였다.

2005. 6. 28.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FTC, Himalayan Diet Break-through의 판매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한 사업자와 화해

소비자 배상금으로 4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

AVS Marketing사와 동 사의

William R. Heid 사장은 “Himalayan Diet Breakthrough”라 불리는 다이어트제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40만 달러의 소비자배상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하고, FTC와 화해하였다. FTC에 의하면 피고는 다이어트제에 대해 식사제한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감량이 가능하다고 선전해 왔다. FTC는, 피고는 다이어트제의 선전시 감량을 주장하는데 있어 7가지 허위 “Red Flag” 중 5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동 선전은 Dallas Morning News, the Albuquerque Journal, Hair Cut and Style, the Cleveland Plain Dealer, the San Francisco Chronicle과 그 외 다양한 출판물에 게재되었다. FTC의 현재 진행중인 “Red Flag” 교육캠페인은 미디어와 그 밖의 매체에 대해 감람에 관한 허위광고를 분별하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더불어 동 화해는 피고에게 식품, 약품, 다이어트 보충제, 기구 및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허위표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TC는 일리노이주 소재의 피고를 2004년 10월에 “Operation Big Fat Lie”의 일환으로 제소하였다. FTC에 의하면 피고는 「반죽(paste) 상태의 제품」으로 히말라야에서 「여름이 되면 기슭 표면의 갈라진 틈으로부터 스며나온다」고 하는 네팔렉 미네랄 피치를 포함하는 다이어트제

“Himalayan Diet Breakthrough”에 대해 허위이면서 근거 없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하였다.

- 식사제한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동 제품에 의해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감람할 수 있다.
- 식사를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섭취해도 실질적으로 감람할 수 있다.
- 체지방의 형성을 예방하여 감람시킨다.
- 모든 사용자가 실질적인 감람에 성공하였다.
- 사용자는 8주간 안전하게 최대 37파운드를 감람할 수 있다.

금일 공표된, 약정된 최종판결(stipulated final judgement) 및 명령은 피고가 금후 다이어트 제품과 그 밖의 제품에 대해 허위표시와 근거 없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번의 명령에는 문제가 된 다이어트 제품의 총 매출액인 490만 달러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는 판결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자산정보에 의거하여 재검토 했을 때 피고는 배상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었다. 명령에 의해 FTC로부터의 40만 달러의 지불에 관한 판결은 일시정지 되었다. 피고가 자산상황을 허위표시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490만 달러 전액을 지불하게 된다.

2005. 6. 20.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호주연방법원의 판결 「Baxter사의 행위는 경쟁을 저해하지만 군주특권(Crown Immunity)에 의해 보호된다」

어제 공표된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Baxter Healthcare사의 행위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여러 주정부 당국과의 거래였기 때문에 1974년 거래관행법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Baxter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주 및 준주(準州)의 조달당국에 각종의 무균액체제품과 복막투석기를 함께 공급하는 계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배타적 행위에 종사했다고 하였다.

동 행위에는 조달당국에 대해 각종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길 원한다면 복막투석기를 Baxter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이 포함되었다. Baxter는 무균액체제품에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었으나 복막투석기에서는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ACCC는 Baxter가 다른 공급자에 의한 경쟁을 방지, 저해 및 방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하였다.

1974년 거래관행법은 통상 정부가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연방법원은 Baxter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卅의 조달

당국에 대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군주특권이 적용되며, 군주특권에 의해서 Baxter는 ACCC가 제기한 절차로부터 보호된다고 인정하였다.

동 보호가 없었다면 연방법원은 Baxter가 복막투석기와 끼워팔기로 무균액체를 제공하고자 제의했던 것과 관련하여 거래관행법의 배타적 거래규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보호가 없었다면 Baxter는 동 법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 규정에도 위반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Allsop 판사는 군주특권이 없었다면 「나는 Baxter의 행위에 관하여 선언 및 금지명령을 하고, 벌금의 부과를 검토했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의 주정부는 자기 주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거래관행법으로부터 적용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ACCC는 본 판결을 상소하였다.

▶배경

ACCC는 Baxter가 무균액체의 공급과 복막질환 환자가 사용하는 복막 투석기의 공급을 끼워팔기 한 3년에서 5년의 장기간의 배타적인 끼워팔기 계약을 New South Wales, the Australia Capital Territory,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및 Queensland 각 주의 조달관청 간에 체결하였다. 각 주 및

준주의 조달관청은 공적병원을 포함한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보건설비에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였다.

국가경쟁정책에 관한 최신보고서 가운데 생산위원회는 호주정부에 대하여 거래관행법을 개정하고, 동 법을 정부의 조달활동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호주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2005. 6. 22.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발표문

독 일

연방카르텔청, 장기 가스공급계약 문제 해결될 것으로 전망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스운송회사와 유통업자 간의 장기 가스공급계약의 자유화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연방카르텔청은 15개 가스운송회사에 문서를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회사들이 일련의 절차를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이미 작년 1월부터 가스운송회사들과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다. 가스공급 회사들은 연방카르텔청의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응답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연방카르텔청은 금지 결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시장봉쇄효과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장기 공급계약의 문제가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지는 사업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이 서명하여 가스공급 회사들에 보낸 제안서에서는 특히 가스공급회사들과 유통업자들(산업용고객이 아님) 간의 계약기간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들 간의 계약은 대략 2년이나 4년의 기간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에 따라 유통업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은 기간이나 양을 나누어서 공급받지 못하고 대량으로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최근 E.ON과 Ruhrgas 사례서 피력했던 견해와는 반대로, 연방카르텔청이 이번에 제시한 제안서에는 몇 가지 합의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부터 면제되어, 연방카르텔청에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나아가 이른바 “de minimis regulation”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량의 거래를 하는 소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방카르텔청이 정한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모든 계약들이 “일괄적”으로 자유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운송회사들은 이러한 의무 조건들을 자신의 경쟁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카르텔청장은 유통업자들에 있어서 가스시장이 상당히 폐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고객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운송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급 계약관계는 배타적으로 장기간으로 체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기 공급 조건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제3의 가스공급업자들은 독일시장에서 가스를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가스운송회사들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진행시켰다. 이제 연방카르텔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운송회사들의 손에 달렸다.

2005. 9. 13. 연방카르텔청

EDEKA와 SPAR의 기업결합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EDEKA Zentrale AG & Co. KG(이하 EDEKA)가 SPAR Handels AG(이하 Spar)와 Michael Schels & Sohn GmbH & Co. OHG(이하 NETTO Schels)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에는 Offene Handelsgesellschaft NETTO Supermarkt GmbH & Co.(이하 NETTO Stavenhagen)의 주식 중 25%를 취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업결합은

궁극적으로 ALIDIS/Agenor라는 공동구매 및 판매협동조합에 EDEKA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의 말에 의하면, 이번 기업결합은 음식물 소매시장에서 구매 또는 판매 중 어느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판매 분야에서 연방카르텔청은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을 할인시장을 포함한 소매 식품품 시장으로 정의한다. 이번 사례에 대한 경쟁제한성 조사에서, EDEKA 협동조합이 3,800 이상의 독립 소매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EDEKA가 이들 소매업자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간의 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을 할 유인은 없어 보였다. 연방카르텔청은 또한 지리적 시장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 90개 지역 시장을 조사했다. 이들 시장 중 약 20여개에서, 만일 독립적인 EDEKA 소매업자들을 시장점유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결합기업이 약 3분의 1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간에 지역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결합기업의 경쟁자들도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도 고려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식품품 소매시장은 상대적으로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지역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 방법으로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확정하는 경우, 식품품 구매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이나 강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인식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3분의 1 이하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EDEKA가 ALIDIS/Agenor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쟁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보았다.

2005. 9. 9.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디지털방송 사업 검토 요청 거부

연방카르텔청은 Vodafone D2의 장래 BOS 디지털방송 사업에 대한 검토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방카르텔청의 제3조달심결부에서 이를 거절한 이유는 형식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연방내무부가 BOS 디지털방송 사업 검토를 비밀리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르면, 이처럼 비밀 공표를 하는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된다.

검토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하게 됨에 따라, 조달심결부는 공공 계약 체결시 DB Telematik 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절차를 생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2001년 이래 연방정부와 각 주들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해 왔다. 정부기관과 조직들을 위한 보안 문제를 해결한 국가차원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Behörden und Organisationen mit Sicherheitsaufgaben; BOS)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 8. 3. 연방카르텔청

Holiday Jack은 독일 시장에서 활동하는 패키지 전문 여행사로서, 이번 여름부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이 TUI의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TUI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어떠한 반경쟁적인 행위도 하지 말도록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현지 호텔 측에도 TUI의 경쟁사와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도록 관계자들과 연락을 할 것을 약속했다. TUI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카르텔청은 더 이상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2005. 8. 2. 연방카르텔청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은 다른 공급자로 구입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다른 건 제쳐 놓더라도,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탱크를 교체해야 한다. 전체 시장은 의미있을 정도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효과로 인해 공급자들간의 경쟁은 제한될 것이고, 신규 진입이나 시장 확장의 의욕도 생기지 않는 대신,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인상만 유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공청회, 공급자, 사업자단체, 관련 정부기관 및 자문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거친 후에, 경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국과 북아일랜드 LPG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 공급자들이 공급자 교체에 대한 조건과 교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실제로 공급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LPG 탱크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고자 한다.
-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교체절차가 불편하고,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통지 의무 또는 의무기간 규정 등 계약상 제한이 있다.

연방카르텔청, 여행사 TUI에 대한 조사 종결

연방카르텔청은 그동안 해온 TUI사가 자신의 경쟁사인 Holiday Jack S.A.에 대해 부당한 방해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여행사인 Holiday Jack이 신고를 해옴에 따라 TU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Holiday Jack은 TUI의 현지 직원들이 카나리아 제도, 터키의 휴양지 및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현지 호텔 측에게 Holiday Jack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쟁위원회, LPG 대량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 마련

경쟁위원회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LPG 공급시장에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LPG 소비자들에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부장인 Peter Freeman은 “우리는 경쟁이 효과적으로 기능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LPG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발견됐는데, 하나는 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급자간의 요금 차이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자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할인을 해 주거나 경쟁사들의 소비자 확보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에 대해, 경쟁위원회는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이 사실을 공지했다. 그리고 경쟁위원회는 경쟁제한 효과가 사업자들의 행태와 관련한 것이며, 시장 구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 LPG 탱크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협정서 제정
- 공급자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절차의 표준화
- 소비자에게 교체 과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다른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계약 조건으로 공급자 교체 장벽에 대한 대처
- 계약상 사전 공지 기간의 단축

2005. 8. 23. 경쟁위원회

경쟁위원회, 청소장비업체간 기업결합 승인

경쟁위원회는 Bucher Industries

AG(이하 Bucher)의 Johnston Sweepers Ltd(이하 Johnston)에 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영국내 야외 청소장비 시장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

Bucher와 Johnston은 도로, 주차장 및 포장도로 등을 청소하기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이 청소장비의 주 고객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용역을 받은 청소대행업자들이다. 기업결합 전에 Bucher는 영국내 사업활동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청소업 관련 새로운 유통사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경쟁위원회 Peter Freeman 조사 부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결합 기업이 현재 또는 장래에 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2005. 8. 5. 경쟁위원회

일본

공취위, 2004년도 연차보고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국회에 매년 독점금지법의 시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년도 공정취인위원회 연차보고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 독점금지법 개정

과징금감면제도의 도입, 범칙조사 권한의 도입, 심판수속 등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법이 2005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같은 달 27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 35호).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하기로 했다.

2.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적극적 배제

(1)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2004년도중에 35건의 법적 조치(독점금지법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권고)를 472개 사업자에 대해서 취했다. 이 35건을 행위유형별로 보면, 사적독점 2건, 가격 카르텔 2건, 입찰담합 22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8건 및 기타 1건이다.

(2) 2004년도의 과징금액은 총계 219건, 총액 111억 5,029만엔의 납부명령이 확정되었다.

3. 기업결합규제의 적확한 운용

(1) 기업결합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에 대해 14건의 인가, 지주회사 등에 대해 79건의 보고, 지주회사 등의 설립에 대해 1건의 신고, 회사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및 양수 등에

대해 259건의 신고, 사업회사의 주식 소유에 대해 778건의 보고를 각각 수리하여 필요한 심사를 실시했다.

2004년도의 주요한 기업결합 사안을 보면, 대일본 잉크 화학공업 주식회사와 아사히 화학 라이프&리빙 주식회사에 의한 폴리스틸렌 시트 사업의 통합, 스미토모 전기공업 주식회사와 히타치 전선 주식회사에 의한 전력용 전선 판매 사업의 통합, 후루카와 전기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ujikura에 의한 전력용 전선의 제조 사업 및 판매 사업의 통합, 미츠이 화학 주식회사 및 이데미츠 흥산 주식회사의 폴리올레핀(polyolefin) 사업의 통합, 토카이 카본 주식회사 및 미츠비시 화학 주식회사의 카본 블랙 사업의 통합 및 PS 재팬 주식회사 및 대일본 잉크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폴리스틸렌 사업의 통합 등을 꼽을 수 있다.

(2)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한층 확보하여 예견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각 방면의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2004년 5월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을 제정·공표했다.

4. 경쟁 환경의 적극적 창조를 향한 조사·제언

(1)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입찰·계약의 실태나 제도적 과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구 규모별로 분류한 517개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2004년

9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입찰·계약의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2)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공익사업 분야 등에 대하여, 신규 참가의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참가 저해행위 등을 분명히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익사업 분야 등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조사·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의 경쟁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2004년 4월 공표),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2004년 6월 공표), 「적정한 가스 거래에 대한 지침」의 일부 개정(2004년 8월 공표), 휴대전화의 번호이동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적 입장(2004년 11월 공표), 금융기관의 업태구분의 완화 및 업무 범위의 확대에 수반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2004년 12월 공표) 및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참가에 대해(2004년 2월 공표) 등이다.

5. 원칙(Rule)있는 경쟁사회의 추진을 위한 조치

(1)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제거하기 위해 2005년 5월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납입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지정했다.

(2) 하청법에 관한 업무로서, 원사업자 30,932사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170,517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

등의 결과, 하청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인정된 2,588건에 대해, 4건에 대해서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권고를 하였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3) 경품표시법에 관한 업무로서, 동 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 관련 21건에 대해 배제명령을 했고, 표시 관련 21건에 대해 경고를 했으며, 경품 관련 72건과 표시 관련 650건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

6. 경제의 글로벌화에의 대응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도입·집행을 향한 공동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제2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동 지역의 경쟁당국간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합을 개최했다.

2005. 9. 27. 공정취임위원회

공취위, 휴대전화기용 충전기의 판매업자에 대해 경고

공정취임위원회는 휴대전화기용 충전기(이하 충전기)의 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충전기 판매업자 등 13사가 사실과 다른 표시를 실시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고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해 경고조

치 했다.

충전기 판매업자 등 13사는 충전기를 직접 또는 거래처 판매업자를 통해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모두 해당 상품의 포장용기에 마치 휴대전화기의 충전식 전지가 만충전이 되면 충전이 정지되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충전을 검지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은 휴대전화기에 탑재된 기능이며, 해당 상품은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혐의가 있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2005. 9. 26. 공정취인위원회

공정취인위원회, 2006년도 운영계획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담합·병렬 체질로부터의 탈피를 도모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경쟁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05년 4월 20일에 가결·성립되어 2006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규제개혁·민간 개방 추진 3개년 계획(개정)」(2005년 3월 25일 각의 결정)에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이익 일반에 관련되는 문제이며, 엄정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밝히고 있고, 개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

정취인위원회에 있어서의 집행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 개정법의 취지 및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경쟁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 2006년에 특히 다음의 4개 과제 즉, ①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운용, ② 경쟁환경의 적극적인 창조, ③ 규범있는 경쟁사회의 추진 및 ④ 경쟁정책의 운영 기반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경비 약 85억 97백만 엔(전년도 대비 약 4억 66백만 엔, 약 5.7%의 증가)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요 과제인 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나, 하청법 등의 운용 체제의 충실 등을 기하기 위해 50명의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운용

현재의 경제 실태나 행정 과제를 근거로 하고,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운용을 실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가격카르텔·입찰담합 사안, 경제성장의 핵이 되는 IT·공익사업 분야나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사안, 국제카르텔 사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새롭게 도입된 과징금 감면제도나 범칙 조사권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을 촉진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에 노력한다. 대형화되고 복잡한 합병 사안 등의 심사에 대해서 신속·적확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경쟁환경의 적극적인 창조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참가 저해행위 등을 분명히 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경쟁환경의 적극적인 창조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외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보급·개발 활동을 보다 한층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3. 를 있는 경쟁사회의 추진

시장 참가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특히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경품표시법에 위반하는 부당표시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한다.

또한 신설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우월적지위의 남용이나 부당염가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신속·엄정하게 대처한다. 컨텐츠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 등에 있어서의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엄정하게 대처한다.

4. 경쟁정책의 운영 기반의 강화

업무 시스템의 최적화를 목표로 함

과 동시에, 외부 인재의 등용, 직원에 대한 연수의 충실 등을 도모하여, 경쟁정책 관청으로서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또한 외부 연구자와의 협동에 의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도입하고 토의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적확한 운용에 활용한다.

2005. 8. 31. 공정취인위원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변경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정취인위원회는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에 근거해, 부동산 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로가 신청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변경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취인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업계가 설정한 자율규범이다.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옥션 형식의 거래가 보급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형태가 다양화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향상 등에 수반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표시가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정 이래 대폭적인 재검토를 몇 번이나 거친 결과,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소비자 및 사업자가 보다 알기 쉽게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다. 이번 변경은 이러한 부동산 업계의 변화나 규약 구성상의 문제 제기를 받고, 규약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한 것이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시 기준 등의 신설 및 변경

(1) 건축 조건부 토지 및 자유 설계형 맨션 기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표시 사항을 정했다.

(2) 예고 광고를 하는 경우 14포인트 이상의 크기의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필요 표시 사항, 특정 사항의 명시 의무, 기사 광고인 취지의 명시 의무 등에 대해서는 7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3) 입찰 및 경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의 필요 표시 사항(입찰 등의 기일 또는 기간, 최저 거래가격, 물건의 개요, 현지 확인의 방법 등)을 정했다.

(4) “만전”, “업계 1위”, “저렴” 등의 용어는 그 표시 내용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5) 지명, 공원, 제일 가까운 역, 큰 길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 기준(예를 들면, 공원·정원 등의 시설의 명칭은 그것이 직선거리로 약 300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을 마련했다.

(6) 인터넷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표시 매체를 이용해 물

건을 표시하는 경우의 필요 표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광고의 필요 표시 사항을 규정한 별표를 마련했다.

(7) 교통의 편리성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통레인 경우는 제일 가까운 역 등의 명칭 및 제일 가까운 역 등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당표시규정을 추가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정청취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차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정청취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5. 8. 25. 공정취인위원회